



**+입법정보**

# 세종의회의소식

세종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

SEJONG CITY COUNCIL



## 세종의정 소식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식 개최...새 출발 알러

## 5분 자유발언

세종시 제2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해

## 주요 안건 처리 현황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안



#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사

SEJONG CITY COUNCIL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고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  
제3대 세종시의회의 새 역사를 써나갈 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제3대 세종시의회 출범에 뜻을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2012년 7월 세종시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며, 초대 세종시의회를 열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제1대와 제2대를 거치며,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탄탄히 내실을 기하기 위해登高自卑(登高自卑)의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배, 동료 의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세종시의회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제1대와 제2대 의회가 시작과 성장을 위한 기초를 쌓는 기간이었다면, 3대 의회는 도약과 성숙을 향한 정의롭고 위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는 민심의 향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표심에 깃든 국민들의 진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국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상식을 기반으로 제3대 세종시의회는 또다시 시민들을 향해, 그리고 성숙 단계에 접어든 세종시의 도약을 위해 시종일관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내외빈 여러분!  
제3대 세종시의회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몇 가지 큰 틀의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열린 소통과 화합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현실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치로 의정활동이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민생이 정치활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시민들은 의회를 적극

지지하고 격려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감성과 품격의 정치로 시민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선사해야 합니다. 의회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그 속에서 심의·의결되는 사안들은 대부분 민생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 민심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보듬을 수 있는 의정활동은 새 시대의 지방자치의회가 추구하는 운영 방향과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세 번째, 희망과 나눔의 정치로 의회가 발전적이지자 희망적인 의제와 비전을 제시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회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의회 곳곳에 희망과 긍정의 가치들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균형과 화합의 정치로 신도심과 원도심 간 유기적인 상생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개발 중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읍·면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세종시가 지역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잇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된다면, 지역 격차 해소는 물론,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내외빈 여러분!

어느덧 추운 겨울과 따사로운 봄을 지나 작열하는 태양의 계절,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3대 세종시의회는 다시 새로운 씨앗들을 심어 새 결실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개원하는 제3대 의회의 노력과 열정이

한반도 전역에 부는 평화의 바람을 타고 작열하는 태양처럼 소중한 결실을 영글게 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인구 30만 명을 돌파한 세종시는 앞으로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서 국가균형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지금처럼 모든 시민들이 뜻을 같이 한다면 현정사 최초의 행정수도 탄생도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꿈은 실행에 옮기는 순간, 실현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어딘가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지 않고 매순간 고민하고 움직이는 생동하는 의회, 단결과 밀실의 시대를 벗어나 소통과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선진 의회,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들을 대표해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내외빈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에 대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 진심어린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개원사를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서금택

서금택



세종의회소식 통권 제18호



<b>세종의정 소식</b>	<b>4</b>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식 개최...새 출발 알려 外 의정 포커스	
<b>5분 자유발언</b>	<b>28</b>
<b>주요안건 처리현황</b>	<b>40</b>
제48회 임시회 / 제 47회 임시회	
<b>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b>	<b>45</b>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b>입법정보</b>	<b>55</b>
생활정보 법령	
주요 입법동향	
법령 해석사례	
최근 시행 법령	
타 지자체 제개정 자치법규	
<b>언론에 비친 세종시의회</b>	<b>80</b>
<b>세종시티투어</b>	<b>82</b>



###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식 개최...새 출발 알려

서금택 의장, “도약과 성숙을 향한 위대한 여정될 것”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7월 2일 오전 10시 총령탑 참배 후 오후 2시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원식에는 시의회 의원들은 물론,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고진 세종시교육감, 관계 공무원과 가족·친지 등 약 50여 명이 자리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와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며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서금택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세종의의회는 민심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처럼 모든 시민들이 뜻을 같이 한다면 헌정사 최초의 행정수도 탄생도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시의회 청사 앞 정원에서 기념식수를 끝으로 공식 행사 일정을 마쳤다. 한편, 제3대 세종시의회는 개원식 이후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연수와 의원간담회, 제50회 임시회 개최 등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마쳐

서금택 의장, 안찬영 제1부 의장, 이영세 제2부 의장 당선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7월 1일 오후 2시 제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이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2일 의회 개원식을 앞두고 치러졌다. 이는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당초 일정보다 원 구성을 하루 앞당겨 완료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 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는?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의장단 선거 결과, 서금택 의원이 18표 중 18표를 득표해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어 제1부 의장과 제2부 의장 선거가 각각 진행됐다. 투표 결과 안찬영 의원이 18표 중 17표를 얻어 제1부 의장에 당선됐고, 이영세 의원은 18표 중 15표를 득표해 제2부 의장에 당선됐다.

- 서금택 전반기 의장**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정진하겠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
- 안찬영 제1부 의장** “부족한 저에게 중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17번째 광역의회로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품격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을 돕는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이영세 제2부 의장**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성 문제를 해결해온 여성정책 전문가로서 낮은 자세로 일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저와 뜻이 같은 여러 의원님들과도 적극 소통하겠다”

#### 원 구성 마쳐...2일 개원식 개최

세종의의회는 의장단 선출 이후 제4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원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행정복지·산업건설·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 별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장에 채평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장에 차성호 의원, 교육위원회장에 상병헌 의원이 당선됐다.

- 채평석 행정복지위원회장**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장**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상임위 소임에 맞는 책임 있는 상임위를 이끌어갈 것을 약속한다”
- 상병헌 교육위원회장** “부족한 저를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과 함께 세종시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이재현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됐다.

-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 “저에게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며 여러분과 소통하며 의회운영을 잘 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 숫자로 본 제3대 세종시의회





# 제3대 세종시의회,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재선의원 5명에 불과...새로운 얼굴로 세대교체  
의원 평균 연령도 낮아져...각 분야 전문가 다수 포진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이끌어갈 18명의 시의원 명단이 확정됐다. 총 16명의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비례대표 2명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첫 번째 지명자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교육학박사인 윤형권 의원과 소정·전의면장 등 공직 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가 이재현 의원과 체육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임채성 의원 등도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을 지낸 여성 정책 전문가 이영세 의원도 빼놓을 수 없다.

## 재선에 성공한 의원 총 5명...각 분야 전문가 포진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총 5명이다. 선거구 순으로 살펴보면 서금택 의원, 이태환 의원, 김원식 의원, 안찬영 의원, 윤형권 의원은 2대 의회에 이어 3대 세종시의회에도 입성하게 됐다.

### 참고사항

2012년 초대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3선에 성공한 시의원은 없다.

또한 3대 세종시의회 원 구성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될 전망이다. 대전보건대학교 겸임교수인 보건학박사 이윤희 의원과 22년 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한 행정전문가이자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인 유철규 의원, 39년 간 공직에 몸담다 시의원에 당선된 서금택 의원이 대표적이다. 2대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찬영 의원 역시 도시공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기간 지역을 위해 일하고 연구한 지역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채평석 의원과 노종용 의원은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비례대표 박용희 의원은 세종시 학부모연합회 회장 출신이며 역대 최연소로 상임위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태환 의원은 조치원 출신이다.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손현옥 의원, 그리고 1-4 모아미래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손인수 의원도 있다. 차성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무적 감각을 지닌 의원도 상당수다. 상병헌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정무특보였고, 김원식 의원은 2대 의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역임했다. 또 박성수 의원은 현 20대 국회에서 의원 보좌관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 '젊은 의회'로 세대교체...변화를 요구한 민심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젊은 의회'로 세대교체가 이뤄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새로 선출된 3대 세종시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2대 의회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조사 결과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2대 의회 50.2세, 3대 의회 49.3세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연령대는 30~60대 사이에 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세종시민들이 기성 정치인들의 안정성보다 정치 신인들의 도전과 열정에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민심을 읽을 수 있었던 선거였다"고 분석했다. 3대 세종시의회 의원 성비는 2대 의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2대 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 15명 중 여성 의원은 3명이었고, 3대 의회에서 여성 의원은 4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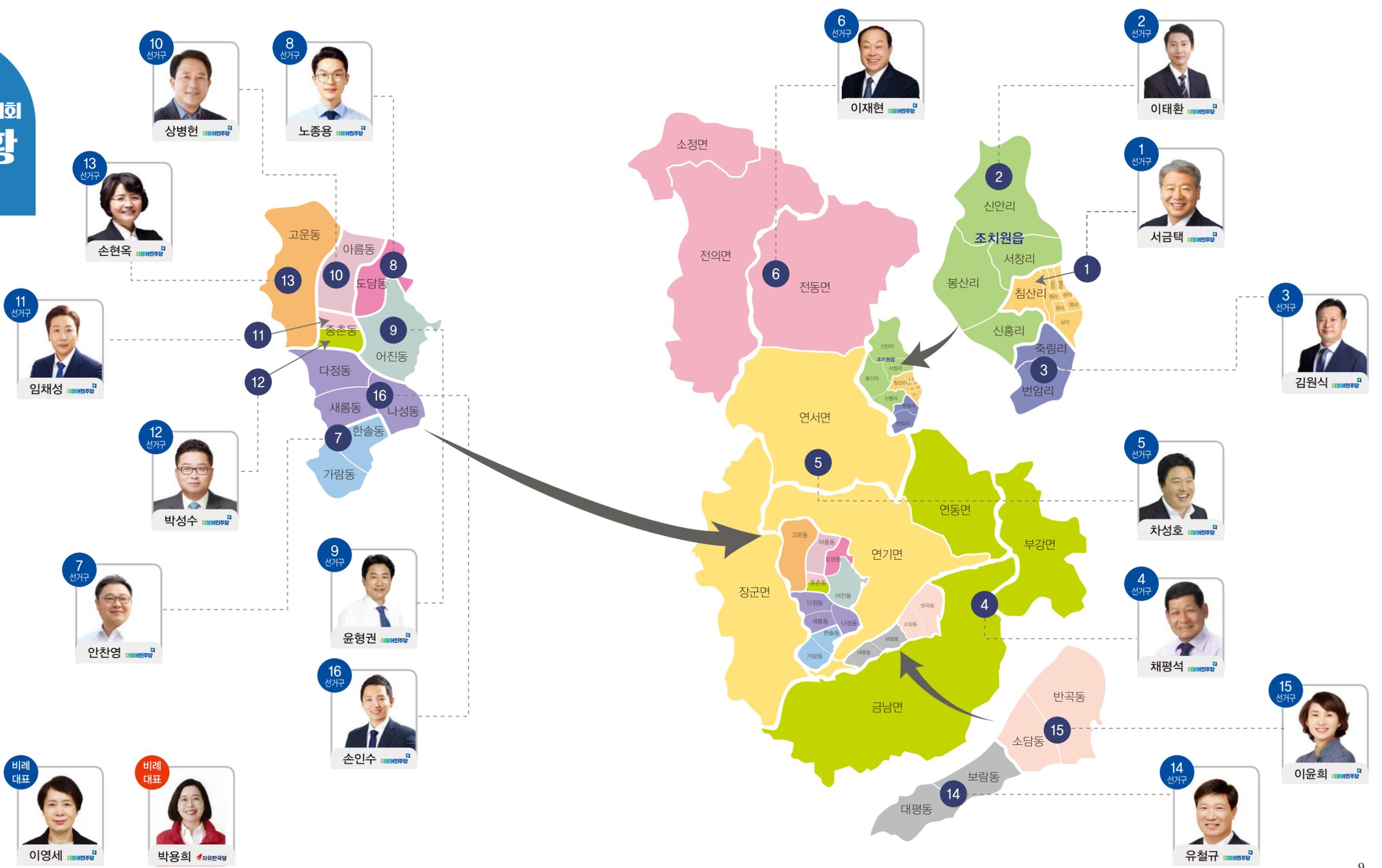
### 참고사항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 연령(18명)

- 30대(3명) 이태환·임채성 의원(이상 32세), 손인수 의원(34세)
- 40대(5명) 박성수 의원(40세), 안찬영·노종용 의원(이상 41세), 이윤희 의원(43세), 차성호 의원(49세)
- 50대(6명) 박용희 의원·손현옥 의원(이상 50세), 김원식 의원·상병헌 의원(이상 51세), 윤형권 의원(55세), 유철규 의원(56세)
- 60대(4명) 이영세 의원(62세), 서금택 의원(65세), 채평석 의원·이재현 의원(이상 68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현황

## 세종의정 소식



- 비례 대표** 이영세 (Leeyoungse) - 더불어민주당
- 비례 대표** 박윤희 (Parkyunkyu) - 자유한국당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세종시의회,  
**제48회 임시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 간의 일정으로 제4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첫날인 3월 1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서금택·김원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 기타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상임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했다.

둘째 날인 3월 14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했다. 3월 23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의사 일정을 끝으로 제48회 임시회를 마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평창올림픽  
홍보 활동 전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 이하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2월 22일 강원도 강릉커피 거리와 강릉역 광장 일대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날 홍보 활동은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진행됐다.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강릉커피 거리의 '행정수도 이동식 홍보관'과 강릉역 광장의 '세종시 관광홍보관'을 홍보 캠페인 거점으로 삼고 '세종시=행정수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위원들은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한 채 올림픽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명문화의 당위성을 알리는 리플릿을 배부했다.

정준이 위원장은 "이번 홍보 활동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입'을 명문화하는 개헌의 당위성을 전국에 알리고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개헌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세종시의회, 제47회 임시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7회 임시회를 열었다.

47회 임시회에서는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1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2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태환 의원, 이충열 의원, 서금택 의원, 정준이 의원, 김복렬 의원, 박영송 의원, 윤형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회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제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정준이 의원은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헌', '지방분권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 고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등 세종시민의 염원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세종시의회, 의정회 초청 간담회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월 6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소통과 나눔의 행복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세종시와 연기군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를 개최, 의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희 의정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후 의정회 회원들은 본회의장 등 의회 신청사 곳곳을 둘러보기도 했다.

고준일 의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의정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직 의원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역대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희 의정회장은 "결코 쉽지 않은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후배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선배 의원 모두는 자긍심을 갖고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화답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3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연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는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경남 통영에서 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제3대 의회 개원 준비 및 의정 지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수강과 분임토의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3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연수는 의회사무처 직원 28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제3대 의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준비 사항 점검은 물론, 세부 일정 및 시나리오 등 의정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직원들은 사례별 교육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곽점홍 의회사무처장은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앞으로도 연중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세종시의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세종시의회는 3월 23일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경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이경대 의원은 세종시 농업인 대다수가 직불금 신청 및 친환경 국가인증, 농가 경영체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주시에 위치한 세종·공주사무소까지 1시간 이상을 걸러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원산지 단속 및 안정성 관리 등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촌 발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의원 모두는 한 목소리로 “고령자가 다수인 관내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물리적,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 음식점 급증 등 소비자 측면에서도 알권리 확대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광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서 홍보활동 펼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 이하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2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은방)와 전라북도의회(의장 황현)를 방문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각각 오전과 오후에 걸쳐 차례로 면담했다. 또 의원들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당위성을 알리는 리플릿을 전달하며, 개헌을 통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준이 위원장은 "이번 홍보 활동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는 개헌 당위성을 다른 시도 의회에 알리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전국적인 행정수도 개헌 여론 형성을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 소담동·보람동 일대 교통시설 현장점검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찬영, 이하 '공공특위')는 2월 22일 시민참여단, 시 관련 부서, LH 관계자 등 30여명과 함께 미인수 지역인 3-2생활권(보람동)과 3-3생활권(소담동)의 교통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3개조로 나눠 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하는 한편, 주변 조경·녹지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발견된 파손 시설물 및 방치 쓰레기 등은 시 관계 부서 및 LH와 협의해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참여단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한 시 관련 부서 및 LH 관계자들은 시민 불편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특위는 "앞으로도 인수될 도로 및 공원 이외 환경기초 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시민참여단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체계적인 특위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찬영 위원장은 "공공특위 활동이 점검·지적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미흡사항 추적관리가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 외에 성과발표 등도 개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세종시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위촉식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월 25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의정모니터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발된 의정모니터 요원은 20명으로, 시의회는 위촉식 종료 후 모니터 운영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정모니터 임기는 2년으로 2020년 1월까지 세종시민의 불편 및 제도 개선사항이나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의회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의정에 반영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의정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준일 의장은 “제1기 의정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소통과 나눔의 열린 의회 구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월 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각종 입법 및 소송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입법고문(2명)과 고문변호사(2명)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2명의 입법고문은 제5회 입법고시 출신이다. 서우선 입법고문과 김종두 입법고문은 각각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자치경영연구소장과 국회사무처 입법지원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김태범 고문변호사는 제27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현재 대전종합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며, 진윤기 고문변호사는 제52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현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자치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고준일 의장은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며 “향후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 이하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1월 1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및 세종시청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활동에 대해 점검하고 2018년 추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충열 부위원장이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의 추진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종시청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과 김재근 대변인이 시청에서 추진한 활동 성과와 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준이 위원장은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와 전국 주요도시를 방문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세종시 시민단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교육위원회,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 이하 교육위)는 3월 21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했다.

이중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확대, 학생복지 증진, 교육자치 활성화, 사회적 경제 촉진을 위한 취지로 제정돼 이날 일부 수정 가결됐다.

앞서 교육위는 2017년 9월 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방문,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노하우, 지원 체계를 살펴봤다. 이어 윤 의원은 2월 시교육청 담당과장, 협동조합 전문가 등이 참여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어 2018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태환 위원장은 "이번이 제2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다"며 "격려와 배려 덕분에 대과 없이 교육위원회를 이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여건 조성,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처리된 안건은 3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산업건설위원회,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는 3월 19일 제4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해 5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조건부 동의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도심 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 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제출돼 원안 가결됐다.

유행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공영 주차장 요금 부담을 경감코자 마련됐다. 주차 기본요금 적용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늘리고 임신부 탑승 차량은 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 가결됐다.

산건위는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안찬영 위원장의 주차요금관리시스템 설치와 주차요금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했다. 이밖에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및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은 원안 동의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총 6건의 안건은 3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행정복지위원회, 지역 선거구 등 일부 조례 개정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3월 13일 제4회 임시회 관련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김복렬 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법 시행 후 시·도의회는 12일 이내에 관련 조례를 의결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절차를 맞추기 위해 시급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1건만을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총 15명에서 18명으로 3명 늘어난다. 지역 선거구 시의회 의원 정수는 16명,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변동 없이 2명이다. 지역 선거구는 읍·면지역 6명, 동지역은 10명으로 변경(기존 읍·면 10명, 동 3명)된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3월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 SEJONG CITY COUNCIL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 세종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찾아 '온정의 손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

이날 일정에는 고준일 의장을 비롯해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과 정준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들 의원은 조치원읍 세종요양원을 시작으로 전의면 사랑요양원, 연서면 영명보육원을 차례로 방문해 요양원 어르신들과 보육원생 및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고준일 의장은 "비록 작은 위문품이지만 명절이면 더욱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8년 시무식, '시의회의 발전과 도약' 다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월 2일 총령탑 참배에 이어,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시무식을 갖고 시의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고준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세종시민이 꿈꾸는 행복도시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희망찬 무술년을 맞아 그동안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명품 자족도시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 세종시의회, 2018년도 청렴윤리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월 13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전 직원(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 학습을 통해 청렴한 직장 문화를 조성함과 더불어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추진됐다.

고준일 의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소의를 밝혔다.

※ 세종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지역주민 평가부분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으며,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지역주민 평가 부분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다.



##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 신도심 학교 주변 현장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은 2월 21일 신도심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안찬영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시청 도로과, 교통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 10여명과 함께 오전 11시부터 양지중·고교와 도담초등학교에 이어 고운초등학교 및 가득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을 점검했다. 이날 안찬영 위원장과 관계 부서 담당자들은 통학로 안전 위협 요소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했다.

현장에 나온 부서 관계자들은 학교 주변 무단횡단, 차량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발생 등 안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교육청과 시청이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정소식



세종시의회, 제2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

세종시의회가 제2대 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집약·정리한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백서'를 발간했다.

의정백서는 1천200여 쪽 분량으로 지난 2014년에 7월에 열린 제19회 임시회부터 2018년 상반기 제2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48회 임시회까지의 회기별 의정활동 내용이 담겼다.

총 4개의 장으로 이뤄진 의정백서는 세종시의회의 원 구성 및 연혁 등을 수록한 제1장 의회현황과 각 회기별 운영현황,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수록한 제2장 의회운영, 그리고 의원연구모임 활동, 민원처리 내역 등을 기록한 제3장 기타 의정활동과 4년간의 주요이슈 및 결의·결의문 등을 수록한 제4장 부록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의정백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처리내역과 현안정책 질의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과 시정 및 교육행정의 질의·답변사항을 세밀히 볼 수 있도록 편집됐다.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제2대 의회 의정백서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기록보존과 사료로서의 가치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의 지침서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살아있는 자산가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대 의정소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교동초 등 관내 5개교 현장 방문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2일 관내 5개교를 방문해 교육 현안을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최근 석면 교체공사를 실시한 조치원 교동초등학교와 3월 2일 개교한 세종예술고등학교 등을 방문했다. 먼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교동초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석면 교체공사 현황을 청취하고 교실을 둘러봤다. 교육위원들은 현장에서 "다른 학교도 석면텍스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이어 도담고를 방문한 교육위원들은 학교장으로부터 교실 증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증축될 교실 위치를 확인했다. 2013년 3월 개교한 도담고는 다양한 교육 과정의 운영과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각종 교육 시설의 부족으로 교실 증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위원들은 사전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예산지원을 통해 증축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 번째로, 새롬고를 방문해 2017년 8월 개관한 독도전시관을 관람하고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독도전시관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청과 연계하여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학습권 보장과 통학안전 문제로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1-5생활권 H6 블록을 방문하여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교 앞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네 번째로, 올해 개교한 세종예술고를 방문하여 학교현황과 신생학교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실습실 등을 둘러보고, 예술고의 특성상, 우수 강사와 강사비 예산을 많이 필요하므로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명품 예술고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들은 최근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감성초를 찾았다. 교육위원들은 학부모회장 등과 함께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감성초는 도농공동학교 운영, 통학차량 운행 등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 수가 증가하는 전원학교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교육위는 전원학교만의 강점을 잘 키워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방문을 마치고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각 학교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쉽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 세종시 제2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세종시 제2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원식 의원은 지난 2월 경제산업국 이하 4개 과 사무실이 우체국 건물로 이전한 것을 언급하며 시청사 외부로 공무원들이 분산 배치된 데 따른 예산 낭비 등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현재 조치원 청사 57명, 농업기술센터 44명, 감사위원회 21명 등 총 182명의 공무원들이 외부에 분산 배치된 상황에서 별관 건립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증가하는 공무원 수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 제2청사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조치원청사와 2020년 9월에 임대 기한이 만료되어 이전되는 농정원(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부지에 제2청사를 건립하는 방안과 세종시청 서측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증가하는 공무원 수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 제2청사를 건립하여야 한다”



## 5분 자유발언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서금택 의원은 3월 13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조치원 중심가로에서 조치원복숭아 축제를 열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새롭게 정비된 조치원 중심가로에서 조치원복숭아 축제를 열자’고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서금택 의원은 조치원복숭아가 11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대표 특산품으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는 명품 복숭아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고 전제하고, 최근 조치원복숭아 축제가 복사꽃을 주제로 하는 봄꽃축제와 복숭아 출하 시기인 여름철에 홍보·판촉 중심의 특별판매전으로 분리해 개최하는 등 변화를 시도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축제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경관개선 사업을 마무리한 조치원 중심가로에서 조치원복숭아 축제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지난해 경관개선 사업이 종료된 후 조치원 중심가로에서 인근 상인들이 중심이 되고, 많은 주변 지역민들이 참여한 문화행사가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며, “조치원 중심가로에서 조치원 복숭아를 주제로 한 축제를 마련하여 홍보와 더불어 세종시민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과 함께 청춘조치원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관개선 사업이 종료된 후  
조치원 중심가로에서  
인근 상인들이 중심이 되고,  
많은 주변 지역민들이 참여한 문화행사가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 청년단체 지원 확대, 전담부서 신설, 청년센터 설립 등 제안



정준이 의원은 “2016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청년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먼저 청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전담 부서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서울시의 무중력지대, 청년허브와 같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을 제안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청년은 세종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채워나갈 원동력이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청년은 세종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채워나갈 원동력이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세종시의회 정준이 의원, 윤형권 의원, 임상전 의원은 3월 23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현재는 미래와 연결돼 있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재는 미래와 연결돼 있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윤형권 의원은 “세종시는 하루 백여 명이 시민으로 전입·등록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세종에서는 더욱 건강하고 승진도, 사업도 잘 되는 꿈을 꾸고 있다”면서 “세종시청과 교육청, 의회 등 공직 기관은 세종 시민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책무”라고 했다. 이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소회하면서 본인은 성실하지 않았고, 공무원들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무례를 범하기도 했다”면서 “그동안에 범한 오류와 실책들을 반성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선배·동료 의원과 이춘희 시장 및 최고진 교육감,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세종 시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여 말했다.

“세종 시민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책무”



## 세종시청·시의회 동시 기재 촉구



임상전 의원은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는 어디에 있나?’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상전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보람동 신청사로 이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로표지판과 버스정류장에 세종시의회 표기가 누락되었다” 며 “각종 이정표에 세종시청과 시의회를 동시 기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타 시도와 달리 세종시는 도로표지판뿐만 아니라 인근 버스정류장과 시청·시의회 입구에도 세종시의회를 알리는 표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시청과 시의회를 동시에 표기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명확하지 않은 안내로 의회와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시청과 시의회를 동시에  
표기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명확하지 않은  
안내로 의회와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 이충열 의원, 이태환 의원, 정준이 의원, 서금택 의원은 1월 17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5만 여명이나 되는 데 반해 청소년 활동 예산은 27억여 원 정도로 시 예산의 0.2%에 불과하다”며 “성인으로 가는 중간 세대인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복합 등 공공시설에 청소년 휴 카페 설치 ▲시정참여를 위한 청소년 포럼,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지원 ▲다양한 청소년 클럽 조직 및 활동 지원 ▲청소년 코디네이터·퍼실리테이터 육성 ▲청소년 활동 진흥예산 확대 및 관련조례 정비 등을 제안하면서 “세종시의 청소년 발전 정책이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먼저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성인으로 가는 중간 세대인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해야 한다”



## 세종시 주변도시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



이충열 의원은 “세종시의 인구 증가가 수도권 인구의 분산보다는 충청권 및 주변 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세종시 출범 당시 편입된 공주시, 청원군 등 주변도시와의 상생 및 장기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주시의 경우 출범 5년이 지난 현재 급속한 인구 감소와 시세 위축으로 도시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세종시가 주변도시와 함께 충청권행정협의회와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 등을 구성했고, 공주시와 생활권 선도 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맺어 광역버스정보 시스템(BIS) 구축, 관광벨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생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광역협업체 산하에 실무 기획단을 설치하여 상생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인근 도시들과의 연계 사업 유형을 검토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의 액션플랜 수립 ▲「상생협력 업무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지침」 수립 등 주변도시와의 체계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변도시와 시민들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시기”라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변 도시들과의 상생 및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변 도시들과의 상생 및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해 달라”



##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 도입 제안



이태환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정례 브리핑에서 은퇴 은행과 함께 도입하기로 했던 마일리지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자원봉사를 유도, 관심을 갖도록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제주도와 대전시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와 혜택에 대해 소개하며, “세종시의 자원봉사 등록률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고, 등록된 자원봉사의 활동률도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면서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가진 시민들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세종시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시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긴급돌봄 서비스, 대중교통 무료 이용, 공공자전거 어울림 무료대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세종시 만의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설계하고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가 목표한 2018년까지 자원봉사 등록률 40%, 활동률 60%가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긴급돌봄 서비스, 대중교통 무료 이용,  
공공자전거 어울림 무료대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세종시 만의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설계하고  
운영해줄 것”



## 여성단체 발굴 및 거버넌스 구축 촉구



정준이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 발굴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형식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탁상행정이 아닌 시민의 정책 참여를 바탕으로 세종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완성해갈 것”을 제안했다.

먼저 정 의원은 여성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을 주문했다. 이에 “여성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여성을 위한 창업 플랫폼과 육아, 가사노동 등을 공동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에서 추진 중인 여성플라자 설립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여성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나서서 다양한 여성단체를 발굴하고 이들과 정책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모든 위원회의 구성에 여성 위원 40% 확보를 촉구하며 인재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여성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 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필요



서금택 의원은 지역 내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사적 발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3·1만세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지역 첫 만세 운동으로 알려진 ‘전의만세운동’에 대한 연구나 기념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세종지역 첫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전의시장 내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애국지사 홍일섭 선생이 주도했던 조치원 만세운동 등 지역 곳곳에서 이어진 만세운동과 횡불 시위에 대한 연구 용역과 사적지 조성을 통해 이를 적극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병장 임대수가 이끈 의병부대의 활동, 향토유적 39호 ‘육영재’에서 계속된 민족교육의 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항일 독립운동을 통해 민족혼 계승을 위해 노력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일깨워 나가자”며, “하나 된 염원으로 잃었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정신을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새 역사를 열어가자”고 역설했다.

“하나 된 염원으로 잃었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정신을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새 역사를 열어가자”



## 에너지 절감 방안 강구해야



###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박영송 의원은 1월 24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윤형권 의원은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전기 에너지 절감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서 2017년 11월까지 1년간 세종특별자치시내 청사, 가로등, 복합커뮤니티센터, 도로 조명 및 보안등 등에 140억 원의 전기 요금이 지출되었고, 가로등 전기 요금만 25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연간 1억 원씩 전기 요금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28만 세종시민들이 한 달에 11억 원, 30일 기준 하루에 3천 8백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공공 전기요금 10% 감축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전 시민이 에너지 절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 조성될 5생활권과 6생활권 설계에 전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영되도록 행복청 및 나와 적극 교류·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공공 전기요금 10% 감축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전 시민이 에너지 절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공공시설 수도물 음수대 설치 확대 촉구



박영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도물은 판매용 먹는 물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직접 마시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면서 “자발적인 수도물 직접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공공시설부터 수도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세종시청이 관리 중인 음수대가 12개소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복경, 광역복지센터 등 설립 추진 중인 공공시설에는 설계 단계부터 음수대 공간을 마련하고 대규모 체육시설, 근린공원 등의 기존 시설에도 음수대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로 수도물 수질과 음수대 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관을 고려한 음수대 디자인을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냉·온수 기능을 갖춘 음수대, 반려견을 위한 음수대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도 설치 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음수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거부감 없이 수도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시도 설치 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음수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거부감 없이 수도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48회 임시회

제48회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총 11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제1,2,3차 기간 동안 5분 자유 발언,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과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3건과 2017 회계연도 결산 감사 위원 선임의 건 등 기타 안건 22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2차 본의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정준이 의원), 신도시 공영 주차장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김복렬 의원), 우리 시 농·축산업에 대해(이충열 의원) 등 시민 편의와 관련된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3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종시의회의원 정수 13명→16명, 지역선거구 획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원안가결)

**제 출 자** 정준이 대표발의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윤형권 대표발의

**주요내용** 시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 등이 공영주차장을 위탁 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차 기본요금 시간을 최초 15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여 정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서금택 대표발의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우리 시는 '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서 중앙공모사업으로 조치원중심시가지형 사업이 선정('17.12.14일)되었으며, 사업시행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농림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지역임. 「농지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지역에서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동 지역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사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위원회 제명 수정안)

**제 출 자** 세종시교육감

**주요내용**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및 처분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그 외 조례안

### 시장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기타안건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원안가결)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원안가결)
-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가결)
- 2017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47회 임시회

제47회 임시회는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진행됐다. 47회 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2차)에서는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1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2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이태환 의원, 이충열 의원, 서금택 의원, 정준이 의원, 김복렬 의원, 박영송 의원, 윤형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1월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제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에 이어서 정준이 의원이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헌', '지방분권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계획 고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등 세종 시민의 염원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안(원안가결)

**제 출 자** 정준이 대표발의

**주요내용** 개헌 시기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무관심으로 개헌의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코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이충열 대표발의

**주요내용**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서금택 대표발의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박영송 대표발의

**주요내용** 조례 내용 중 용어의 오기를 바로잡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위탁기간 연장 시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문맥에 맞게 정비함.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정준이 대표발의

**주요내용** 청각·언어장애인 지원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한국수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원안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 사람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함.

###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자해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2339호, 2015. 1. 29. 시행, 법률 제14160호,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평생학습관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법정전출금의 전출 시기와 규모를 정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이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4373호, 2016. 12. 13. 공포, 2017. 1. 1. 시행)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장학재단 출연 시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의 중복수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통합·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장학사업과 평생교육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수정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세종시교육감

**주요내용** 본청의 전체 기능, 국·과 통솔범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교육복지과를 신설하는 교육부 4급 정원 승인에 따라 교육정책국장과 교육행정국장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본청의 사무기능 조정과 행정동 설치를 통하여 본청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대시민서비스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2018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 출 자** 세종시교육감

**주요내용**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근거법령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를 명시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그 외 조례안**

**시장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교육감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기타 안건**

•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 활동

- ① **제47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17일 1차 회의를 열고 제4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 ② **제47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2일 2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 ③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3일 1차 회의를 열고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의 건,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원 및 질문 순서 협의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총 3건을 원안 가결했다.



**3대 의회운영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이재현 위원장**  
1949.9.10 출생  
약력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 소장·전의면장



**이윤희 부위원장**  
1974.12.22 출생  
약력 대전보건대학교 겸임교수



**유철규 위원**  
1962.4.9 출생  
약력 국토교통부 22년 근무



**안찬영 위원**  
1977.1.5 출생  
약력 제2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세 위원**  
1955.8.9 출생  
약력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윤형권 위원**  
1963.3.2 출생  
약력 제2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한국일보 기자

## 행정복지위원회

• 상임위원회 활동

- ① **제47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18일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대변인, 총무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 ② **제47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19일 2차 회의를 열고 행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 ③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3일 1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④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 3대 행정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b>채평석</b> 위원장 1949.7.1 출생 약력 청원군 세종시편입추진위원장,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b>이윤희</b> 부위원장 1974.12.22 출생 약력 대전보건대학교 겸임교수	 <b>노종용</b> 위원 1976.11.9 출생 약력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권익보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b>박성수</b> 위원 1978.2.27 출생 약력 이해찬 국회의원 보좌관	 <b>이영세</b> 위원 1955.8.9 출생 약력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b>안찬영</b> 위원 1977.1.5 출생 약력 제2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 상임위원회 활동

- ① **제47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18일 1차 회의를 열고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경제산업국,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도시교통공사, 균형발전국 순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②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고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1건은 조건부 동의,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등 의견 청취 2건은 찬성 의견 가결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 3대 산업건설위원회를 소개합니다!

 <b>차성호</b> 위원장 1969.2.15 출생 약력 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사무처장	 <b>유철규</b> 부위원장 1962.4.9 출생 약력 국토교통부 22년 근무	 <b>손인수</b> 위원 1983.9.24 출생 약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세종시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본부장
 <b>이재현</b> 위원 1949.9.10 출생 약력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 소장·전의면장	 <b>이태환</b> 위원 1986.4.11 출생 약력 제2대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	 <b>김원식</b> 위원 1967.3.1 출생 약력 제2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 교육안전 위원회

• 상임위원회 활동

- ① **제47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2일 1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제정 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 심의 및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 ②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1일 1차 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세종시교육감 제출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 3대 교육안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상병헌 위원장**  
1966.6.25 출생  
약력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무특보(제19대 대통령선거)

**손현옥 위원**  
1967.11.12 출생  
약력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임채성 위원**  
1986.2.26 출생  
약력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희 위원**  
1967.10.1 출생  
약력 세종특별자치시 학부모연합회 회장

**윤형권 위원**  
1963.3.2 출생  
약력 제2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한국일보 기자

**! 알아두세요!**  
7월 23일 제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전 교육위원회)로 개칭됐다.

##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 ①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9일 3차 회의를 열고 위원 별 의원 별 활동 소감 발표와 함께 2018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안전영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등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3기 공공시설물 인수특위를 소개합니다.

임기: ~2019. 12. 31.

**차성호 위원장**  
1969.2.15 출생  
약력 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 민주당 세종시당 사무처장

**이윤희 부위원장**  
1974.12.22 출생  
약력 대전보건대학교 겸임교수

**안찬영 위원**  
1977.1.5 출생  
약력 제2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손현옥 위원**  
1967.11.12 출생  
약력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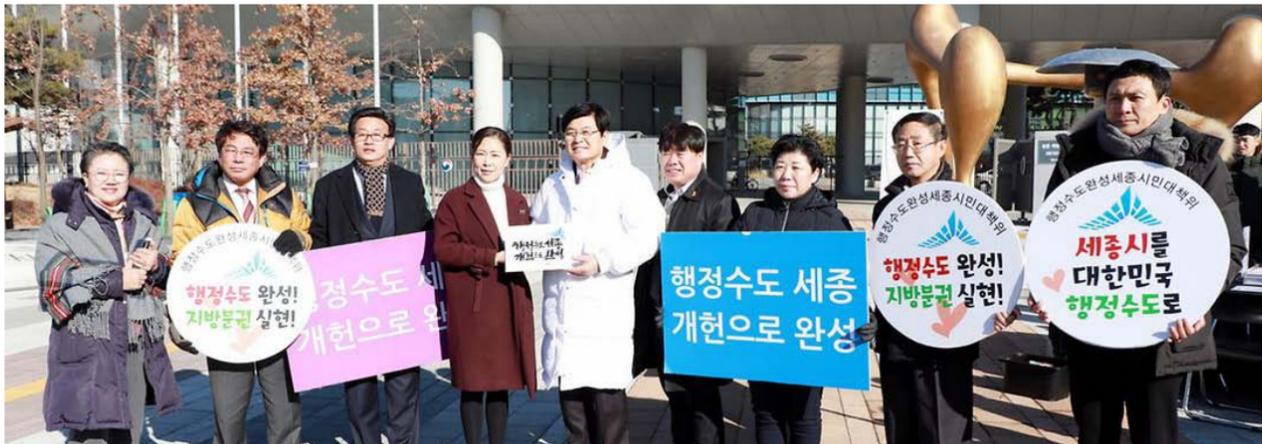
**박성수 위원**  
1978.2.27 출생  
약력 이혜찬 국회의원 보좌관

**손인수 위원**  
1983.9.24 출생  
약력 제19대 대통령선거문재인 후보 세종시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부장

**임채성 위원**  
1986.2.26 출생  
약력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 01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3일 4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추진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충열 부위원장이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했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으로 채택했다.
-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지난해 9월 구성되어 6개월 동안 활동을 했다. 자체회의(4회) 및 홍보활동(7회)과 더불어 행정수도 개헌을 염원하는 세종시민 결의대회 등 시 집행부 및 시민단체와 공조활동(8회)과 시 집행부 · 시민단체 연석회의 활동(3회),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총 27차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제4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모습

## 제2대 세종시의회, 의미와 성과

'민선 2기 세종시의회 회기가 지난 3월 23일 제48회 임시회를 끝으로 종료됐다. '2대 의회의 의미와 성과'와 '2대 의회의 주요이슈', 그리고 '3대 의회를 위한 여건 마련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01 왕성한 입법 활동으로 증명한 생동감 넘치는 의회

제1대 의회가 의정을 위한 필수 조직 구성 및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권익 보호 등 필수적인 조례안 등을 제정하는 데 주력했다면, 제2대 의회는 광역자치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 그 결과 제2대 의회는 안건처리 실적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제2대 세종시의회 안건 처리 현황'을 보면 세종시의회는 4년간 총 1,08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중 의원 발의 안건 233건, 세종시장 및 교육감 제출안이 각각 345건, 65건 가결됐다. 또한 예산 결산안은 56건, 동의·승인·의견청취안 및 기타 안건은 총 336건이 처리됐다. 특히 민선 2기 세종시의회에서 가결된 의원 발의 안건은

23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4년간 15명의 의원이 1인당 평균 3.8건을 제정한 것이다. 일부 보도에서 언급한 전국 광역의회 의원의 한해 평균(1~2건)에 비하면, 2대 시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의회사무처 내에 입법정책 담당 부서를 두어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2대 의회 임기동안 총 255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 자료조사 및 고문변호사의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입법 전문성과 완성도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 02

### 30만 세종 시대, 2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

2012년 7월 1일 지방자치 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 40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과 함께 교통 및 생활,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세종시 인구는 급증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9일 세종시는 충청권에서는 다섯 번째로 30만 대도시 반열에 올랐다. 이처럼 세종시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세종시의회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전국 열일곱 번째 광역의회의 기반을 닦은 초대 의회(2012년 7월 ~ 2014년 6월 30일) 출범 이후, 제2대 세종시의회(2014년 7월 ~ 2018년 6월 30일)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 03

### 발로 댄 소통과 나눔의 2대 의회

풀뿌리 민주주의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더불어 발전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방법으로는 청원, 진정 등이 있다.

2대 의회 통계를 보면 주민 참여는 대부분 진정 민원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인편이나 우편으로 진정 민원이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시정의 각 담당 부서로 민원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접수 처리실적을 보면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된 행정복지위원회(34건)와 산업건설위원회(31건)를 통한 주민 참여가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정 민원은 총 81건 중 76건이 처리됐다. 철회, 불수리, 기타 등의 사유로 처리되지 않은 5건을 제외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답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선 2기 시의원들은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2대 시의원들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실제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연구모임 등 활동 실적을 보면 역동적인 2대 의정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임기 중 총 30여 곳(10일간)의 교육시설을 찾았다. 특별위원회 역시 공공시설 인수특위가 40여 곳(18일간)의 현장을 다니며 시설물 인수상태 등을 점검했다. 또한 연구모임의 경우 일반시민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1회 이상 추진했다. 특히 행정수도 개헌 완성 특별위원회는 9개월간 전국 10여 지역에서 개헌 홍보 캠페인을 벌이며 개헌 이슈를 공론화하는 데 최일선에 섰다. 단 기간 내 현장 중심의 시민 체감형 홍보 캠페인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공식 의정활동 외에도 세종시의회는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방문해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해왔다. 또한 의회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번기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일손을 돕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나눔의 자리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폭우피해 복구지원 현장



민선 2기 의원들은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 04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로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세종시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개씩 9개의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이는 시정 발전을 위한 조례, 정책의 연구 및 주요사업을 분석·평가하여 올바른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각 모임에는 시의원은 물론, 민간인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연구 활동의 질을 높였다.

각각의 연구모임은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장방문 등 활발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의회 연구모임은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 05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적극 대응

민선 2기 세종시의원들은 2014년 9월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했다. 총사업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세종시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조기 완공과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시 공무원의 증원 및 행정 기구 확대로 청사 공간이 부족해진 데다 1·2청사를 비롯 여러 청사가 분리돼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원들은 행정의 비효율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조속히 새로운 청사가 완공되어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2017년 10월 26일 열린 제45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개헌추진 결의안을 발표하고 '세종시=대한민국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행정수도완성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각지를 누비며 '행정수도 개헌 완성'이라는 여론 조성에 안간힘을 썼다. 제2대 의원들은 정파를 초월한 단결력으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이전과 국회 세종분원 설치, 그리고 청와대 및 국회 이전과 행정수도 개헌 이전 대상기관 이전 계획 고시 등 성명서를 내고 민의를 한목소리로 전달했다.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2017년 12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행정수도 개헌' 여론 조성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06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  
균형의 정책 대안 제시

2014~2017년 4년간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상임위별 행정감사 실적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43건, 행정복지위원회 465건, 산업건설위원회 446건, 교육위원회 248건으로 총 1,202건의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해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 연구모임 역시 시정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의원 연구모임 추진 실적에 따르면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연 2회씩 8회에 걸쳐 총 315건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시의회는 긴급 발생한 특정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질문을 실시했다. 긴급현안 질문 내역에 따르면 총 아홉 차례에 걸쳐 62건의 긴급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시정 전반의 주요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5분 자유발언은 시의원들이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해 자유롭게 의제를 설정해 5분간 발표하는 자리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5명의 의원이 총 111건의 의제를 가지고 발언대에 올랐다.



# 입법정보

Sejong City Council

68  
법령  
해석사례

76  
최근  
시행 법령

78  
타 지자체  
제개정  
자치법규



56  
생활법령 정보

61 주요 입법동향

- 최근 공포 법령
-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 최근 입법 예고 주요법령

##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기명날인한 유언장이 유효할까요?

생활법령 정보



‘나다운’ 씨는 질병으로 2015년 10월 18일 사망하였고, 자녀인 ‘나봄’, ‘나빛’ 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운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5년 10월 5일 “나다운 씨 소유의 부동산을 첫째 자녀인 나봄 씨에게 모두 유증하고, 나봄 씨는 상속등기 후 나빛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나다운 씨는 증인 2명의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했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주었으며,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날인했습니다. 나다운 씨도 그 정확함을 승인하였지만 자필로 서명하기가 어려워 공증인과 증인들이 그 사유를 공정증서에 기재하고 공증인이 나다운 씨를 대신하여 나다운 씨의 이름을 적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운 씨가 사망하고 유언장이 공개되자 둘째 자녀인 나빛 씨는 유언장에 나다운 씨가 스스로 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었으므로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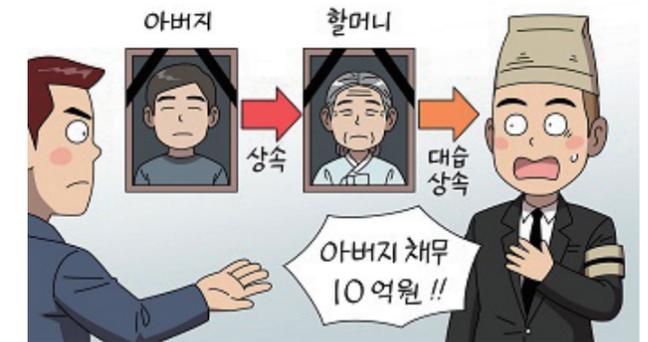
### 평결

나봄 씨: “아버지 유언장은 공증인 및 증인 입회하에 절차를 갖추어서 작성된 것이므로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동생이 왜 무효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의 뜻이 그러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는 ‘유언취지의 구수’가 요건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68조, 제1070조).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유언취지의 구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년 6월 23일 선고 2015다231511 판결).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는 나봄 씨가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했고 공증인은 이를 그대로 기재한 후 나다운 씨에게 읽어주었으므로 나다운 씨의 유언장은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민법」은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1068조), 「공증인법」은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증인법」 제38조제3항·제4항). ‘서명’이란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고, ‘기명’이란 단순히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공증인법」에서 ‘서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동시에 유언자가 서명을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기명날인’의 방식까지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례는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6월 23일 선고 2015다231511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나다운 씨 유언장은 비록 나다운 씨 자필 서명은 없었지만 나다운 씨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대리하여 기명날인하였으므로 「민법」과 「공증인법」에 따른 유효한 기명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다운 씨의 유언장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과 「민법」과 「공증인법」에 따른 유효한 기명날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나봄 씨의 주장대로 유효한 유언장이 될 것입니다.

## 상속 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도 영향을 미칠까?

생활법령 정보



공릉그룹 회장 구필모는 주력사업인 루비화장품의 발암물질 사건으로 최종부도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회장의 모든 채무는 내가 책임 질 테니 너는 좋아하는 꽃 공부에 매진하여라.” 구회장의 외아들 세후는 할머니인 사군자여사의 설득에 상속포기를 하였고, 그 결과 사군자여사는 구회장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공릉그룹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군자여사, 얼마 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할머니까지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던 세후는 옆친 데 덮친 격으로 구회장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던 K은행으로부터 “구세후는 아버지인 구필모의 재산을 단독상속 한 사군자의 재산을 대습상속 하였으므로 구회장의 채무 10억을 변제하라”는 소송까지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제와 빚을 갚으라니, 말도 안 돼!” 과연, 세후는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 평결

민들레: “값아야 할 것 같아. 세후가 할머니를 거쳐 다시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지 않으려 했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포기를 했어야지.”  
대법원은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2000년에 남편 B씨가 사망하자 처 A씨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을 포기하여 B의 어머니인 C씨가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었는데, 2004년에 C가 사망하면서 B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A와 자녀들에게 “B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C의 재산을 (A씨 등이 다시) 대습상속 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낸 사안에서, “B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A씨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후 C가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따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B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A씨 등이 상속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남편 B씨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다시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C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 대습상속

추정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일.

## 자녀를 두고 해외 생활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령 정보



외벌이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아기를 출산한 엄마 미씨.

회사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매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아 근근이 생활하던 중 현지에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남편을 돕기 위해 멕시코 현지에서 몇 달간 생활하기로 하고 온 가족의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출국 며칠 전, 아기가 심하게 감기를 앓기 시작했고, 쉽게 병원에 가기 어려운 멕시코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자니 덜컥 겁이 난 엄마 미씨는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엄마 미씨는 8개월간 멕시코에서 체류하면서 열심히 남편의 창업을 도우며, 틈틈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 아이의 기저귀, 분유, 이유식 재료, 옷 등을 구입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고생하시는 친정엄마에게 필요한 양육비용을 송금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직장에 복귀한 엄마 미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체류하는 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엄마 미씨는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할까요?

### 평결

엄마 미씨: “저는 남편의 창업을 도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멕시코에 다녀온 거예요!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기와 친정엄마께 너무 미안했지만 멀리서도 최선을 다해서 육아를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라니요. 억울해요!” 최근 대법원은 남편의 해외창업을 위하여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지급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② 「고용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선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따라서 엄마 미씨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전혀 없이 오직 해외출국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50m 이동했을 뿐인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는다고?

생활법령 정보

황금빛 아파트A동에 사는 서태수는 전날 밤 지하주차장 A동 구역에 주차자리가 없어 50m 옆에 있는 B동 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다음날 급한 일로 지방출장을 간 서태수에게 아파트관리실에서 차량을 해당 동 구역으로 속히 이동 주차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서태수는 집에 있는 딸 서지안에게 차를 이동해서 주차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무면허였던 서지안은 아버지의 말에 따라 B동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A동 구역 주차지역으로 이동해 주차했고, 이 광경을 평소 알고 지내던 최도경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 평결

서지안: “최도경 씨, 나 술 때문에 그렇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면허 있었어. 그리고 우리 아파트 사람만 이용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작 50m정도 이동했다고 처벌받는 건 너무하잖아!” 입니다.

본 건 사안은, ①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와 ②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고 정하되,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및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및 제45조에 따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③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예외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참조).

②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및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참조).

따라서 서지안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음주 또는 약물복용 등을 하지 않는 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서지안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주요 입법동향 최근 공포 법령



### 0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06.19 공포 / 18.06.20시행/대통령령 제28982호)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하려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274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02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18.6.19공포/18.6.20시행/대통령령 제28984호)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도화 및 융·복합을 통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연관 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5276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부동산 융·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대상 및 지원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8.6.19 공포/’18.6.19 시행/대통령령 제28983호)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 04 국민연금법 시행령

(‘18.6.19 공포/’18.6.20 시행/대통령령 제28978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분할연금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05 공증인법 시행령

(‘18.6.19. 공포/’18.6.20. 시행/대통령령 제28976호)

지정공증인이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인증을 하기 위한 인터넷 화상 장치의 기준 및 본인확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아 공증인의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인의사록의 범위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 01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 기계설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8.3.30. 통과)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여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 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직업안정법(임이자 의원 등 10인 '18.3.30. 통과)

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안 제26조).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등 19인 '18.5.28. 통과)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 · 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02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세법 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안별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규정하되, 국제거래에서 동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년간으로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등에는 역내 · 역외 구별 없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역외탈세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탈세 행위보다 적발이 어렵고 국부의 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현행 7년간)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등(현행 5년간)에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강화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척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 · 준 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 · 제5항 신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

2017년 11월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총자산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대부분을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기구의 조직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음. 기금운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 등 주요 정보를 보고받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없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부통제규정이 존재하나, 2013년에는 1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가 2017년 들어 7건으로 급증해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모럴헤저드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처벌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법률상에 기금운용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거래를 제한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5조의2 신설).

**운용역** 펀드 매니저와 같은 말이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등 10인)

동물은 사람에게 경제적 효용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해서는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무분별한 도살행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제1항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행위의 양태가 추상적이어서 어떤 도살방법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단속 근거로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하여 가축이 아닌 동물을 소유자 등이 임의로 도살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됨. 그 결과, 일반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반려동물을 도살 · 처리하거나 식용으로 가공 · 유통하더라도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의 도살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전환하여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한 경우 또는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도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보조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 · 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6대 4의 비율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의 전통시장 중 상당수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 · 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시 · 군 · 구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 · 확장 및 수리 사업을 지원 · 보조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비의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신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등 11인)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주요  
입법동향  
최근 입법 예고  
주요법령



### 0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8.7.2.까지)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을 예시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을 우선토록 한 동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법령 제·개정 시 국가와 지방간 임의적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지방 자치권 제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제·개정 법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제·개정 법령으로 인한 자치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사전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의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 및 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권을 보장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 02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8.7.10.까지)

과거 군에 입영하여 병사로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수행하였으나, 당시의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8.7.23.까지)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해야 함.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기타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 04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8.7.25.까지)

각한 청년실업난을 고려하여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체로 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체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의 발굴·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화하여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0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8.8.6.까지)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파주시의 지역 균을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

### 0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8.8.6.까지)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6.25전쟁으로 수습되지 못한 유해 발굴사업을 허용하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보전산지에서 농·어업인에게만 허용되었던 주택 및 부대시설을 임업인까지 확대 허용하여 임업인의 권익증진 및 국민 불편사항 해소하는 등 현행 법률 시행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07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8.8.6.까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사서를 두는 내용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368호, 2018. 2. 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는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 산정 기준과 학교 규모에 따른 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 SEJONG CITY COUNCIL

## 01

질의(법제처-17-0080 / 회신일자 2018. 3. 21.)

### ❓ 질의요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0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 🗨️ 회답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0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합니다.

### 📌 이유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는 생존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유하게 부여되어 정확성과 보편성이 담보되므로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고유식별정보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이므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목적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로서 그 지향점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헌법재판소 2005. 7. 21. 결정 2003헌마282 결정례 참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 등”이라 함)을 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 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 사무의 범위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의 신청등과 그 처리에 관한 일련의 사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합전자민원창구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목적은 보다 간편하게 민원사항의 신청 등을 하고 처리기관의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함)을 수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 행정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각 행정기관 등이 소관하는 민원사항에 관한 신청 등을 하거나 그에 따른 민원처리의 통지 등을 수신·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민원인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일련의 사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0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 SEJONG CITY COUNCIL

소유자가 한 동意的 효력도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동意的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유효한 동意的로서 상속인의 동意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7항 등의 위임에 따라 동意的자 수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도시개발법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1-6-1은 「민법」 제187조 및 제1005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곧바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상속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신속하게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5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헌법재판소 2004. 10. 28. 결정 2003헌가13 결정례 참조), 변경된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한 동意的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 동意的행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에 동意的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상속인이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 그 동意的를 철회하지 않는 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동意的를 상속인의 동意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73조에서는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함)가 변경된 경우에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들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는 조합 설립인가에 동意的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意的한 것으로 보되(본문),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意的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그런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에 동意的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그 취득의 방법이 매매이든지, 상속이든지 그 방법과 상관없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005조 본문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전단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별도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등기 절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가 권리의 실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조합 설립 인가에 동意的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사망하였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이전되고, 종전 토지

### 02

질의(법제처-180075 /  
회신일자 2018. 4. 11.)

#### 질 의 요 지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에 동意的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동意的를 상속인의 동意的로 볼 수 있는지?

#### 회 답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에 동意的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상속인이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 그 동意的를 철회하지 않는 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동意的를 상속인의 동意的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유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意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

### 03

질의(법제처-180100 /  
회신일자 2018. 5. 30.)

#### 질문의요지

시·도지사 등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시·도지사 등이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이하 “운행정지 자동차”라 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내용 또는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다른 행정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에서는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1)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국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1910915호)

참조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제2호)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은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을 단속하는 데에 유료도로 통행기록 중에서 운행정지 자동차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선별하여 제출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이라도 그러한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운행정지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한다고 하여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정보유출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2) 법제처 2017. 12. 12. 회신 17-0513 해석례 참조 오히려 그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그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사실을 경찰청장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서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의 공고 주체를 그 운행정지를 명한 시·도지사 등으로 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동차에 관한 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이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고하기 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는 운행정지를 명한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알리고 일반 국민에게 공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시·도지사 등에게 그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제공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SEJONG  
CITY  
COUNCIL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 04

질의(법제처-180255 /  
회신일자 2018. 6. 21.)

#### ❓ 질의요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Mileage)에 대해 기부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 의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마일리지에 부여되어 있는 금액의 가치만큼 금전의 형태로 바꿔 이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에 전달한 경우, 금전의 형태로 바뀐 마일리지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 합니다

#### 📌 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기부금품을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나 물품의 의미 또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마일리지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외에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기부금품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품을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하면서(제2조제1호),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의 등록절차(제4조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즉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 모집절차(제6조 및 제7조),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등에 대한 등록청의 관리·감독(제9조 및 제10조),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용도 제한(제12조제1항) 및 모집자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법 제14조제2항) 등 모집자와 모집종사자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등에 관한 규제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부금품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으로서의 금전이나 물품은 “기부자”가 아닌, “모집자”를 기준으로 그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모집자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가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기부금품이라고 할 수 있고, 금전의 형태로 바뀌기 전에 기부자가 기부한 것이 마일리지라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2)2) 법제처 2010. 12. 30. 회신 10-0397 해석례 참조

그리고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허가제가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기부문화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자율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적 논의가 있었다는 점과3)3)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의 기부 행위 및 기부 대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기부금품법의 규정체계 등을 고려할 때, 기부금품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지 않은 “기부자”를 기준으로 기부 대상 금품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부금품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기부금품법의 입법 방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사안에서 금전의 형태로 바뀐 마일리지를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는다면 같은 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 즉 모집자가 금전으로 기부를 받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기부자가 기부할 당시의 형태에 따라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를 막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부금품법의 여러 규정들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SEJONG  
CITY  
COUNCIL

# 최근 시행 법령

- ①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위생용품관리법」, 4월 19일 시행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1회용 기저귀 등 국민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 관련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됩니다.
- ② **제조물 결함 여부에 대한 소비자 입증책임 경감** 「제조물 책임법」, 4월 19일 시행  
제조물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관련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결함 여부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공급 당시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 ③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25일 시행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④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 금지** 「약사법」, 4월 25일 시행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등(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 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합니다.
- 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제도 정비** 「가축전염병 예방법」, 5월 1일 시행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일시이동 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여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⑥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근로기준법」, 5월 29일 시행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노동자가 충분한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이 개선됩니다.  
  
(현행)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어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  
(개정)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 ⑦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및 장애인 고용률 제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8. 5.29. 시행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⑧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월 30일 시행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시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⑨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6월 13일 시행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등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이 수사기관에 전자장치 수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가 전자발찌를 못쓰게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도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 ⑩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2018.6.13. 시행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⑪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2018.6.14. 시행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관광 분야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또한,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 홍보,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⑫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 포함 기준 개선**  
「국민연금법」, 2018.6.20. 시행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합니다.

### 분할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는 현행 규정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헌법불합치결정 반영(2015헌바182)

타 지자체  
제개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5. 23. ]

제안이유

빈곤아동은 학업중퇴, 자살, 알코올 중독, 비행청소년 등의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임에 따라 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진로상담 및 교육지원과 빈곤아동의 부모 대상 취업 알선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함 (안 제6조제1항제2호).
- 나. 아동의 진로상담 및 교육,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1항제3호,4호).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8. 6. 25. ]

제안이유

-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 개정에 따라 규정(훈령)으로 제정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도모

주요내용

- 가. 학술용역 대상사업의 범위 및 목적 규정(안 제1,2조)
- 나. 학술용역 심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다. 용역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11조)
- 라. 용역(평가)결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안 제12조)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5. 23. ]

제안이유

부산시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산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감정노동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라.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 마.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1. ]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첫째아이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다.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이에게 출산장려금 30만원 지원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라. 지원신청인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마.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바. 지원 중단할 수 있는 경우와 대장비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 사. 조례 시행일과 적용례에 대하여 부칙으로 정함





# NEWS PAPER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 大田日報

### 세종시의회 고문변호사 등 위촉



세종시의회는 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각종 입법 및 소송문제 자문을 위해 서우선·김종두씨를 입법고문으로, 김태범·진윤기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각각 위촉했다.<사진>

제5회 입법고시 출신인 서우선 입법고문은 현재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자치경영연구소장으로, 김종두 입법고문은 국회사무처 입법지원 위원으로 각각 재직 중이다. 또한 김태범 고문변호사는 제27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대전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며, 진윤기 고문변호사는 제52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현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은현타 기자

2018.01.04(목) · 대전일보

## 충청신문



### 세종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훈훈'

세종시의회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과 정준이 예결위원장이 13일 세종요양원(조치원읍), 사랑요양원(건의면), 영명보육원(연서면)을 차례로 찾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2018.02.14(수) · 충청신문

## 충청투데이

### 고준일 세종시장 중앙공원 2단계 간담회

세종시의회 고준일 의장은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관계자들과 '중앙공원 2단계' 사업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복도시 S-1 생활권에 조성되는 중앙공원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금개구리 보전구역 논쟁으로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해당 민간단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일 의장은 "세종시의 중앙공원을 '한국판 센트럴파크'로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에게 기대감만 안겨놓고 정작 사업을 진행하는 세종시, 행복청, LH가 '민간단체 간 양측 합의 불발'이라는 이유로 각자 떠남하기로 일관하는 듯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고준일 의장은 공원조성 지연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의회는 생태도시 시민협의회 관계자와 행복청, LH의 입장을 듣고 중간자적 역할을 통해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 8일 생태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후 행복청과 LH 관계자를 만난 후 의견교환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세종=강대목 기자

2018.03.08(목) · 충청투데이

## 충청신문



세종시의회가 지난 23일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3일부터 11일간의 회기로 열린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의원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 세종시의회, 제48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13건 등 처리... 국립농산물품질원 설치 촉구

세종시의회가 지난 23일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3일부터 11일간의 회기로 열린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3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기타 안건 22건을 처리했다. 이날 정준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16년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청년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또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을 제안하고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한 목소리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임규모 기자 in13031303@dailycc.net

2018.03.26(월) · 충청신문

## 동양일보



지난 4월 글벗초 학생들이 세종시의회 운영하는 의회교실에 참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 의원 호감도 '쑥쑥'

상반기 의회교실 초등생 참여율 상승... 80% '만족'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가 3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 상반기 의회교실을 통해 시의회 및 시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상반기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 916명을 대상으로 호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시의회 및 시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중가' 또는 '증가했다'고 답했다. 특히 의회교실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친 비율이 87%로 높았다. 가장 유익하고 좋았던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견학참가자들 중 49%는 '의회 퀴즈'라고 답했고, '모의 의회참가자들의 63%는 '모의 본회의'를 택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지역 14개 초등학교와 중학생 916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해왔다. 6월 1일 마지막 체험 행사를 끝으로 총 25차례(견학 22회, 모의의회 3회)의 상반기 의회 체험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만화를 이용한 의회 소개 책자 제작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학생들에게 의회가 어려운 곳이 아닌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전환을 통해 의회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2018.06.05(화) · 동양일보

## 忠淸日報

### 세종시의회 의장 서금택

18명 만장일치 당선 "시민 뜻 잘 받들 터" 부의장에 안찬영·이영세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세종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의장단 선거에서, 서금택 의원이 세종시의회(18명) 만장일치로 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서금택 의장은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 훌륭한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나갈다"고 밝혔다. /서중=최성일기자



3대 세종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서금택 의원.

2018.07.03(화) · 충청일보

국사봉 - 고북저수지 코스

산과 물 사이 고즈넉한 여행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광지는 대체로 아기자기한 특색을 띠고 있다. 작은 규모의 관광지들은 오밀조밀 어울려 세종시 특유의 분위기를 낸다. 누구나 아는 대표 명소가 아닌, 세종시 곳곳에 숨겨진 지역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여기는 제주도? 아니 세종시! **도개비도로**

전의면 다방리에 위치한 비암사는 세종시의 대표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사찰로 향하는 길목에 신기한 도개비 도로가 있다. 이 도개비 도로는 130m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주변 환경으로 인해 오르막길인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곳이며 실제 지형은 내리막길이다. 도개비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시 지정 문화재 4점을 보유한 고찰(古刹) 비암사에 도착할 수 있다.

위치: 세종시 전의면 다방리 212

이곳에 가면 풍속이 보인다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은 폐교였던 금사초등학교를 재단장한 곳이다. 이곳에는 세종시 발전사는 물론, 우리 전통 의식주 문화를 재현해놓은 각종 유물과 전시품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 소유한 유물은 토기 자기 등을 포함해 총 1300여점에 달하며 민속놀이와 탐본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입장료는 무료.

운영시간: 9:00~18:00(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명절 당일 휴일)

위치: 전의면 금사길 75



맛과 멋이 있는 **고북저수지**

고북저수지는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고북리와 용암리 일대 77만㎡ 면적에 조성됐다. 이 저수지에 가물치, 붕어, 잉어, 메기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고북저수지를 모태로 한 고북자연공원이 조성돼 있어 야외조각 전시장과 야외수영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특히 고북자연공원 인근에는 고북저수지에서 잡은 각종 민물고기 음식점들이 성업 중이며, 이들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도 적지 않다.

위치: 세종 연서면 고북리 산36-1

공원 속 역사가 깃든 곳 **연기대첩비공원**



연기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고북자연공원에 높이 10m의 연기대첩비를 건립하고 그 주변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했다. 연기대첩은 1291년(충렬왕 17년) 한희유, 인후, 김흔 등이 고려를 침공해 금강 연안까지 밀고 내려온 원나라의 반란군 합단적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정좌산에서 격파한 싸움이다. 이 전투는 고려시대의 대표적 역사서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되어 있는 7대 대첩 중의 하나로 꼽힌다. 공원 안에는 대첩비 외에 조각상, 놀이시설, 파고라, 잔디광장 등이 있다.

위치: 연서면 도신고북로 586

행복도시 둘레길 7코스, '국사봉 누리길'

은하수공원 후문 공원관리소에서 시작해 국사봉과 독골, 범지기진입광장 등을 지나는 총 5.8km의 도보 여행길이다. 주요 코스로는 나무가 울창한 산길을 1시간쯤 오르면 고려 말엽 3정승이 국론을 협의했던 산으로 알려진 국사봉의 정상, 전원생활을 엿볼 수 있는 독골마을 등이 있다.

코스: 공원관리소 → 국사봉 → 독골 → 범지기진입광장 → 역새원 → 공원관리소 **소요시간** 약 3~4시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일정

08.28-09.19

### 제51회 제1차 정례회 (23일간)

-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14일)

10.17-10.24

### 제52회 임시회 (8일간)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11.12-12.14

### 제53회 제2차 정례회 (33일간)

- 시정 · 교육행정 질문
- 2019년 본예산, 2018년 추경예산안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 본회의 날

※ 기본일정은 의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08. AUGUS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8. 15(수) 광복절

#### 10. OCTO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03(수) 개천절 / 10.09(화) 한글날

#### 12. DEC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09. SEPT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9. 22(토)~09.26(수) 추석연휴 5일간

#### 11. NOV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018



## 시민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방송 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http://counciltv.sejong.go.kr)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세종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의회에 바라는 글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 증명사진 및 관련사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보내실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담당자 박천국)
- 전화 | 044. 300. 7248 • 팩스 | 044. 300. 7219 • 이메일 | havnpark@korea.kr

2018 | 통권 제18호 | 표지 사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사 전경



발행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공보담당)  
발행일 | 2018년 통권 제18호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전화 | 044-300-7242  
홈페이지 | <http://council.sejong.go.kr>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http://council.sejong.go.kr>